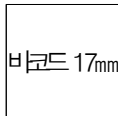
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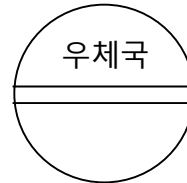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반송용

주택 재산세

받는 사람



음성안내

납 부 장 소

은 행 방 문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
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 상 계 좌

온 라 인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년 주택 기분 재산세

음성
안내



납부하실 금액

까지 납부 시

원

[기 분]

① 산출세액	원
② 경감세액	원
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	원
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법 또는 조례 감면	원
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시군구	재산세	수납은행 확인용
-----	-----	-------------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------	----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-------	------

전자납부 번호	
------------	--

납기 내: 까지

세 목	납기 내 세액
-----	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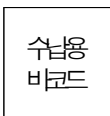
--	--

합 계	
-----	--

납기 후: 까지

납기 후 세액	
---------	--

년 월 일



수납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

시군구	년 (주택 기분) 재산세	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	납세고지서 검 영수증
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납세번호	기관	세목	연월기	과세번호
------	----	----	-----	------

납 세 자
주 소

납세자번호

과세대상

수납용



세 목	납기내 금액	납기 후 금액	과세표준	납기 내	원
재산세(주택)				까지	
도시지역분					
지역자원시설세				납기 후	원
지방교육세				까지	
합 계					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 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

장



담당자
문의처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납부 번호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

구분	재산세(주택)			
시가표준액 (×)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 (×)			
공정시장 가액비율 (=)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 (=)			
과세표준 (×)	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] (×)			
세율 (=)	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	
	6천만원 이하	0.1%	0.05%	
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	
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	
	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	
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(=)				
산출세액 (-)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 (-)			
감면 (-)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 (-)			
세부담상한 초과액 (=)	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	6억원 초과
	상한율	105%	110%	130%
(=)				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			

재산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	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납세의무자	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납부지연 가산세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과세표준 상한제도	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※ 과세표준상한액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
세부담 상한제도	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심판청구	-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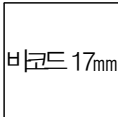
구분	과세표준	세율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
지역자원 시설세	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60%	과세표준	세율
		600만원 이하	0.04%
	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	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	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	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
	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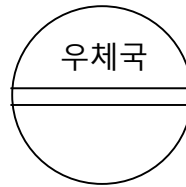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반송용



바코드 18mm

음성안내

주택 재산세

받는 사람

자동납부 현황

금융회사(신용카드회사)

예금주(소유주)

계좌번호(신용카드번호)

성명(법인명)

자동이체(납부)일

※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.

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 통지서

귀하(귀 법인)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(신용카드)에서 해당 자동이체(납부)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주택 기본 재산세

음성
안내

바코드 18mm

납부하실 금액

원

① 산출세액	원
② 경감세액	원
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	원
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법 또는 조례 감면	원
자동이체 세액공제	원
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[기본]

귀하(귀 법인)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 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사군구

년 (주택 기본) 재산세

도시지역분
지역자원시설세
지방교육세

납세고지서

납세번호

기관

세목

연월기

과세번호

납세자
주소

납세자번호

과세대상

세목	납부할 세액	과세표준	납기 기한
재산세	재산세(주택)		까지
	도시지역분		
	지역자원시설세		
	지방교육세		담당자
합계			문의처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

※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

구분	재산세(주택)			
시가표준액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			
(×)	(×)			
공정시장 가액비율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			
(=)	(=)			
과세 표준	재산세(주택) 과세 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 표준상한액]			
(×)	(×)			
세율	과세 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	
	6천만원 이하	0.1%	0.05%	
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	
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	
	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	
	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			
(=)	(=)			
산출세액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			
(-)	(-)			
감면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			
(-)	(-)			
세부담상한 초과액	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	6억원 초과
	상한율	105%	110%	130%
(=)	(=)			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			

재산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	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납세의무자	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납부지연 가산세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과세표준 상한제도	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※ 과세표준상한액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
세부담 상한제도	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심판청구	-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구분	과세 표준	세율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
지역자원 시설세	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60%	과세표준	세율
		600만원 이하	0.04%
	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	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	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	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
	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